



수도료 고지서 발부 정책: 요금 미납으로 인한 주택용 수도 서비스 중단

- 1. 목적:** 본 정책은 “수도 차단 보호법”으로 알려지고 2018년 9월 28일에 주지사가 승인한 상원 법안 998을 준수하기 수립되었습니다(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16900, 이하 참조). 본 정책은 샌루이스 오비스포(San Luis Obispo) 카운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의 수도료 고지서 발부 사무소에 (805) 781-5252번 전화로 또는 PW.AccountsPayable@co.slo.ca.us로 이메일로 연락하여 이 정책의 조건에 따라 요금 미납으로 인한 가정용 수도 서비스의 중단을 피하기 위한 옵션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비-주택용 수도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발효일:** 본 정책은 2022년 9월 13일에 발효됩니다.
- 3. 공표 언어:** 본 정책과 본 정책에서 필요한 서면 통지는 영어, 민법 섹션 1632에 열거된 언어들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및 한국어 포함) 및 “카운티”의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최소한 10%가 사용하는 기타 언어로 제공 및 공표되어야 합니다.
- 4. 주택용 수도 서비스 중단 선행 요건**
 - A.** “카운티”는 고객이 최소한 60일 동안 연체할 때까지 요금 미납으로 인해 주택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금 미납으로 인해 주택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기 최소한 7 업무일 전에, “카운티”는 계정에 이름이 등록된 고객에게 전화로 또는 통지서로 연락해야 합니다.
 - B.** “카운티”는 (A)호에 따라 계정에 이름이 등록된 고객에게 전화로 연락할 시, 시 직원은 본 정책을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해 주겠다고 해야 합니다. “카운티” 직원은 요금 미납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의 중단을 피하기 위한 옵션을 논의하자고 제의해야 하고, 이 옵션에는 대안의 납부 일정, 연기 납부, 최소 납부, 미납 잔액의 분할 납부 요청 절차, 그리고 요금 고지서의 요금에 대한 검토 및 이의 제기 신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카운티”는 (A)호에 따라 계정에 이름이 등록된 고객에게 통지서로 연락할 시, 납부 연체 및 임박한 수도 서비스 중단에 대한 통지서는 등록 주소로 고객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고객의 주소가 주택용 수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물의 주소가 아닌 경우, 통지서는 주택용 수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물의 주소로도, “입주자” 앞으로 송부되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명백하고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아니합니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연체 금액.
3. 주택용 수도 서비스의 중단을 피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거나 납부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기일, 이 기일은 공공사업 부장 또는 그 피지명자의 재량에 따라 연장되지 않는 한 요금 고지서의 요금이 연체된 날짜로부터 60일이어야 합니다.
4. 연체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의 설명.
5. 요금 고지서의 요금에 대한 검토 및 이의 제기 신청 절차의 설명.
6. 연체된 주택용 수도 서비스 요금의 분할 납부가 포함된, 연기된, 감액된, 또는 대안의 납부 일정을 고객이 요청할 수 있는 절차의 설명.
7. “카운티”의 전화 번호 및 게재된 “카운티”의 정책으로 이동하는 웹 링크.

5. 선의의 통지 요건

- A. “카운티”가 고객 또는 거주지에 거주하는 성인에게 전화로 연락할 수 없고, 통지서가 배달 불가로 우편으로 반송되는 경우, “카운티”는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 거주지를 방문하고 요금 미납으로 인한 주택용 수도 서비스의 임박한 중단 통지서와 요금 미납으로 인한 주택용 수도 서비스의 중단에 대한 “카운티”의 정책을 남겨 두어야 하거나, 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 두기 위해 다른 준비를 해야 합니다.
- B. 고객이 요금 고지서의 요금에 대한 검토 또는 이의 제기를 청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납부 기일 전에 그리고 “카운티”가 조사하기 전에 “카운티”에 연락해야 합니다. “시”의 조사가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고객은 공공사업부의 직원에게 요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나중에 공공사업 부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 부장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카운티”는 이의가 계류 중인 동안에는 주택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주택용 수도 서비스 중단 금지

- A. “카운티”는 다음 조건들 모두가 충족되는 경우 요금 미납으로 인해 주택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1. 고객, 또는 고객의 세입자가, 주택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면 수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당해 건물의 거주자의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그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고 확인하는 일차 진료 기관의 확인서를 “카운티”에 제출합니다. 이 경우, 일차 진료 기관이라는 용어는 복지 및 기관 법의 제14088조, (b)항, (1)호, (A)목에 정의된 바에 따릅니다.
 2. 고객이 자신이 “카운티”의 정상적 요금 고지 주기 내에 주택용 수도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재정적으로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합니다.



고객의 가구 구성원이 CalWORKs, CalFresh, 일반 부조, Medi-Cal, 사회보장 생활 보조금/주 생활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또는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의 현재 수혜자이거나, 또는 고객이 가구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이라고 신고하는 경우, 고객은 “카운티”의 정상적 요금 고지 주기 내에 주택용 수도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재정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3. 고객이 모든 연체 요금에 대해 분할 납부 약정 또는 대안의 납부 일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습니다.

B. 하위 섹션 A에서 위에 나열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카운티”는 “카운티”의 선택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다음 옵션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 미납 잔액의 분할 납부.

a. 고객이 정기 2개월 납부와 동시에 모든 연체 잔액을 상환하는 최대 6개월 균등 납부에 동의합니다.

2. 대안의 납부 일정을 체결.

a. 고객은 12개월 동안 납부하게 될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 공공사업 부장 또는 그 피지명자는 고객이 제6.B호에 기술된 납부 옵션들 중 어느 것의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그 납부 옵션의 변수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미불 잔액은 12개월 내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고객이 분할 납부 또는 대안의 납부 계획을 불이행하고 건물을 비울 경우 거주자 또는 주택 소유자는 미지급 잔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카운티”는 “카운티” 세금 명부, 부동산 유치권, 또는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를 통해 납부 및 모든 수수료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D. 주택용 수도 서비스는 “카운티”가 다음 상황들 중 어느 경우에 건물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서비스를 차단하겠다는 최종 통지서를 게시하고 최소한 5 업무일이 지난 후에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분할 납부 약정, 대안의 납부 일정, 또는 연체 요금에 대한 연기 또는 감액 납부 계획을 60일 이상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 분할 납부 약정 또는 대안의 납부 일정의 의무를 지는 동안, 고객이 자신의 현재 주택용 수도 서비스 요금을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7. 수도 서비스의 복구

- A. “카운티”가 요금 미납으로 인해 주택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시”는 고객에게 주택용 수도 서비스를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고객 계정 잔액은 모든 연체 수수료와 잔액(재연결 요금 포함)을 현재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고객이 납부 계획 옵션을 원하는 경우, 12개월 이내에 남은 잔액을 모두 지불하는 데 동의하는 약정을 작성하는 것 외에도, 모든 재연결 및 차단 통지서 수수료뿐 아니라 연체 잔액의 25%를 납부해야 합니다.
- B. 섹션 6.A.2에 정의된 대로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이라는 것을 “카운티”에게 실증하는 거주자 고객을 위해, “카운티”는 다음 조치를 두 가지 모두 취해야 합니다.
1. 재연결에 대해 재연결 서비스 요금을 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또는 50달러 미만인 경우 실비로 책정합니다. 재연결에 대한 50달러의 최대 금액은 2021년 7월 1일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경에 대해 매년 조정되어야 합니다. “카운티”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치를 결정하기 위해 전년도 2월에서 당년도 2월까지 12개월에 대해 보고된 소비자 물가 지수 - U (로스앤젤레스-롱비치-애너하임, 캘리포니아 주 모든 도시 소비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연체 요금에 대한 이자를 12개월마다 1번씩 면제합니다.

8. 임대주와 세입자 관계를 수반하는 서비스

- A. “카운티”가 단독-가정 주택, 다세대 주거용 건축물, 및 이동식 주택의 거주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계량된 주택용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당해 주택, 건축물, 또는 공원의 소유주,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등록 고객인 경우, “시”는 당해 계정이 연체되어 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 “카운티”는 중지되기 최소한 10일 전에,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 통지서에 의해, 거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 통지서는 또한 거주자에게, 연체 계정에 대해 지불해야 할 금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 없이, 수도 서비스에 대해 요금 고지서가 발부되는, 고객이 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통보합니다.
- B. “카운티”는 각 거주자가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지 않고 법과 “카운티”의 조례, 결의, 규칙 및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주자들 중 한 명 이상이 당해 계정에 부과되는 차후 요금에 대해 “카운티”가 만족할 정도로 책임을 질 의향이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는 “카운티” 서비스 구역 요금 조례에 따른 보증금 납부, 필수 문서 작성, 및 이전 계정의 미납 잔액 납부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요건이 포함됨), 또는 “카운티”가 “카운티”의 요건을 충족하지



많은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중지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카운티”는 서비스 약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카운티”가 확신하는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9. **보고 요건:** “카운티”는 요금을 납부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주택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한 건수를 매년 “카운티”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주 수도 자원 관리 위원회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10. **본 정책의 제한:** 본 정책의 어느 조항도 본 정책에 명시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카운티”가 중지할 수 있는 조치를 제한하지도 않고 달리 약화시키지도 않습니다.